

제 343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 덕 식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전화 7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방간실
전화 75-6444, 6090

1972. 1. 30.

시 보

차 례

이 영수증은 서울특별시공보실
필법으로 발행되었음.

1972. 1. 30.
서울특별시 시민과장

- ◎ 조 례
 - 제 747 호 서울특별시 소방용수리시설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3
 - 제 748 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등재해보상에 관한 조례 5
- ◎ 규 칙
 - 제 1287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소종업원규칙중개정규칙... 11
 - 제 1288 호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규칙중개정규칙... 12
- ◎ 고 시
 - 제 13 호 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..... 12
 - 제 17 호 서울도시계획시설및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..... 13
- ◎ 공 고
 - 제 13 호 분노비수거구역 지정 공고 14
 - 제 14 호 청산금납입고지서 공시 송달..... 15
- ◎ 사 령 17
- ◎ 정 정 17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!

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소방용 수리시설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

1973년 1월 29일 제 4 조 (소방용수량과수리시설의위치)

○ 서울특별시조례 제 747 호

서울특별시 소방용수리시설의 기준에 관한 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소방법 제 2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에 필요한 수리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소화전등의설비)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는 수도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 저수조 기타 소방용 수리시설을 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소방용수리시설의종류) ① 소방법 제 26 조제 2 항의 규정에서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.

- 1. 소화전
- 2. 저수조
- 3. 둘

- 4. 하천
- 5. 해, 호, 운하
- 6. 못
- 7. 우물
- 8. 급수탑
- 9. 하수도

① 소방용수리시설은 상시 저수량이 40 입방미터 이상 또는 흡수 가능수량이 매분 1 입방미터 이상이고 계속하여 40 분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.

② 소화전은 관구 직경 63.5 밀리미터이어야하고 직경 150 밀리미터 이상의 배관에 부설하여야 한다. 다만 부설배관망의 일변이 180 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75 밀리미터 이상의 배관에 부설할수있다.

제 5 조 (소방용수리시설의 설치구분)

① 소방용수리시설은 시가지 [건축물의 밀집한 지역의 평균 건폐율(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를 그 가구의 면적에 대하는 비율)이 10% 이상의 가구에 연속된 지역이고 그 구역내의 인구가 1만 이상의 지역을 말한다.] 또는 밀집지(건축물의 밀집한 지역으로 평균 건폐율이 10% 이상의 가구에 연속된 지

역이고 그 구역내의 인구가 100명 이상 1만명 미만의 지역을 말한다)의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 수리시설까지의 거리는 별표에 계기하는 수치가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②시가지 또는 밀집현 이외의 지역과 이에 준하는 지역의 소방용 수리시설은 당해 지역내의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수리시설까지의 거리는 140미터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③전 각항에 정하는 소방용 수리시설의 배치는 소화전만 필증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소방용수리시설 설치의예외)
소방용수리시설이 지정수량(제 4 조 제 1 항에서 정한 수량을 말한다)의 10 배이상의 능력이있고 소방자동차 5 대가 동시에 부설하여 흡수할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소방용 수리시설로부터 140 미터이내의 부분에는 그 이외의 소방용 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방용수리시설의조건) 소방용 수리시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.5미터

이내

2. 흡수부분의 수심이 0.5미터 이상

3. 소방펌프 자동차가 용이하게 부서할 수 있을것.

4. 흡수해 치장이 있는 토사, 진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제거의 설비가 있을것.

5. 관 투입공이 방형의 경우에는 일변의 길이 30 센치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직경 30 센치미터 이상일것.

제 8 조 (소방용수리시설의관리의무)

소방용수리시설의 관리자는 모든 소방용 수리시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.

①(시정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의하여 행한 모든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.

구분을 평균통속	구조율이 2/3 이상이고 연간 평균 풍속이 매초 4 미터 미만의 곳	기 타
상업지역, 공업지역	100 미터	80 미터
기타지역 및 용도지역의 지정이 되지 아니한 지역	120 미터	100 미터

참 고

1.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.
2. 구조율이라 함은 지붕이 불연재료 (건축법 제2조제1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) 또는 연소의 방지

에 있어서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구조이고 또한 외벽이 토벽이거나 또는 연소의 방지에 있어서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구조로 된 구조물의 수와 당해 시가지 또는 필집지의 건축물의 총수에 대한 비율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등 재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장
1972년 1월 29일

사한 자로서 이로 인하여 질병, 부상 또는 사망한자(이하 "의용소방대원등"이라한다)에 대한 보상(이하 "재해보상"이라 한다)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① 서울특별시조례 제 748 호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등 재해보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소방법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한 의용소방대원과 동법제 32조제 2항 또는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연소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중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봉급월액"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5급을류 1호봉의 봉급액을 말한다.

제3조(재해보상의종류)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요양보상
2. 장해보상
3. 장재보상

제4조(요양보상) ① 의용소방대원등 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상

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치료를 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한다.

②전항의 치료비는 봉급월액의 5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5조 (장해보상) ①의용소방대원등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
②전항의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해보상금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.

③별표 2에 계기된 신체장애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.

④이미 신체장애가 있는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장애가 가중된 경우에는 전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액에서 이미 받은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액을 공제한 금액을 장해보상액으로 한다.

제 6조 (장제보상) 의용소방대원등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

에게 봉급월액의 12월분을 지급한다.

제 7조 (재해보상청구) ①제 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는 별지 제 1호서식 내지 제 3호서식에 의하여 재해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중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.

10-5

별표 1 신 체 장 해 등 급 표

등급	신 체 장 해
제 1 급	1. 양안이 실명된 자 2. 양상지의 완관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3. 양하지의 족관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. 4.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자 5. 편상지중 완관절 이상과 편하지의 족관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6. 흉복부 또는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종신토록 취업 능력을 잃은 자
제 2 급	1. 편안이 실명된 자 또는 양안의 조정시력이 0.1 이하로 된 자 2. 편상지중 완관절 이상이 절단된 자 3. 편하지중 족관절 이상이 절단된 자 4. 생식기의 결손으로 인하여 생식기능을 잃은 자 5. 흉복부 또는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것이 현저한 자 6.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것이 현저한 자
제 3 급	1.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것이 현저한 자 2. 외기도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것이 현저한 자 또는 안모에 심한 추형을 일으킨 자 3. 고막의 결손으로 인하여 청력이 완전히 상실된 자 4. 척추에 심한 기형을 일으켰거나 척추의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에 장애를 받은 것이 현저한 자 5. 양무지 혹은 수지중 5 지 이상을 잃은 자 6. 편상지 또는 편하지의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을 잃은 자
제 4 급	전 각등급 이외의 신체장애

별표 2 신 체 장 해 등 급 별 장 해 보 상 표

등급	보 상
제 1 급	보급월액의 10 월분
제 2 급	보급월액의 9 월분
제 3 급	보급월액의 8 월분
제 4 급	보급월액의 7 월분

제 2 호서식

장 해 후 보 상 청 구 서

1. 소 속 (주소)

2.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(월 일)

3. 상 병 명

4.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

5. 장애의 정도

위의 사실과 상 위 없음을 증명함 .

소재지

병원 또는 진료소명칭

직 및 성명

1. 장애발생년월일

2. 장 해 명

3. 청구금액및장애등급

위의 사실과 상 위 없음을 증명함 .

년 월 일

당해소방서장

(인)

위와 같이 청구함 .

년 월 일

청구자주소

성명

(인)

서울특별시 장 귀 하

규 칙

◎ 서울특별시 규칙 제 1287 호

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수사업소 중
의원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
한다.

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
업소종업원 규칙중개정규칙
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소 종업원
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
1973. 1. 29

별표 2 종업원 일급표를 다음과 같이
한다.

별표 2

종업원 일급표

직 종	일 급 액 (원)	비 고
승 무 감 독	1,030	
자 동 차 운 전 원	1,030	
자동차정비사 (정비관리자에 한함)	1,000	
자 동 차 정 비 사	850	
자 동 차 부 정 비 사	670	
자 동 차 정 비 원	400	
자 동 차 부 정 비 원	300	
배 차 원	320	
수 금 원	320	
경 비 원	270	
사 감	320	
안 내 원	180	
정 비 보 조 원	180	
차 량 정 비 원	180	

부 칙

이 규칙은 197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
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서울특별시장
1973. 1. 29

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
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 3 조 (배점기준) 별표 1 중 일련번호
" 20 "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288 호

일련번호	위 반 내 용	적 용 법 조	배 점
20	주 차 위 반	제 28 조	20 점

제 5 조 (처분의 한계) 별표 3 중 일련번호 "6" 을 삭제하고, 일련번호 "7" 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련번호	종 별	적 용 법 조	처분기준내용	비 고
7	복 장 위 반	운수사업법 제 18 조	30 일간 정지	

부 칙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3 호

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

1. 서울특별시내 도시계획학교 시설
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, 제 13 조

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1
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
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도시계획과 및 성동구청 시민봉사실
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
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가. 학교시설 조서			
구분	위 치	시 설 면 적	비 고
학교	서울특별시성동구명일동 309 번지일대	32,340 ^{m²}	고 등 학 교
<p>별첨도면조시와 같음 (생략)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에 보관. 1973. 1. 23. 서울특별시장</p>			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17 호</p> <p>서울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일 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일부(사업인가선 일부조 정 및 진입로변경)를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변경하고 동법 제 25 조의 규 정에 의하여 변경시행할 것을 동 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에 각 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1973. 1. 30. 서울특별시장</p>		<p>1. 사업시행지의위치 :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평창동산 601 의 88 필</p> <p>2. 사업의종류 :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명칭 : 평창주택단지 사업면적 : 264,606 평</p> <p>3. 시행자의주소, 성명 : 한진부동산주식 회사 대표 김 의 상</p> <p>4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: 착 공 : 71. 10. 12. 준 공 : 73. 6. 30.</p> <p>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(생략)</p> <p>6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자 투지수 용법 제 4 조 제 3 항에 규정된 관계 인의 주소 성명 (생략)</p> <p>7. 시설변경조서 가. 사업인가선 조정 별첨도면 참조</p>	

나. 가로변경 조서

구 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변경 전	중로	3	1	12	254	대로 3-58 호	소로 2 - 2 호	건설부고시제 378 (71. 6.25) 평면상 2미터 위 치 이 동
변경 후	"	3	1	12	254	"	소로 1 - 1 호	
변경 전	"	3	2	12	565	"	소로 1 - 1 호	노 선 변 경
변경 후	"	3	2	12	525	"	소로 1 - 2 호	
변경 전	"	3	3	12	300	"	소로 1 - 2 호	
변경 후	"	3	3	12	295	"	소로 1 - 2 호	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3 호

분노비수거구역지정공고

오물청소법 제 3 조 제 1 항 단서 및
동법 시행령 제 1 조 제 1 항의 규정

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특별청소지역
에서 제외되는 분노의 비수거구역을
지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 1 조의 규
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73. 1. 30.

서울특별시장

구 별	동	통	구 별	동	통
성 동 구	명 일 동	천 지 역	성 북 구	공 능 동	전 지 역
"	길 일 동	"	"	중 계 동	"
"	암 사 동	"	영 등 포	사 당 1 동	"
"	송 파 동	"	"	잠 원 동	"
"	방 이 동	"	"	서 초 동	"
"	거 여 동	"	"	양 재 동	"
"	일 월 동	"	"	가 양 동	"
"	세 원 동	"	"	발 산 동	"
"	신 곡 동	"	"	과 해 동	"
"	청 담 동	"	동 대 문 구	신 내 동	일부지역 (3,5,6통)
"	내 곡 동	"	"	계	22개동
"	도 곡 동	"			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14 호

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

청산금 납입고지서를 각 납입 의무자에게 발송한바 있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직접 송달이 되지않아 지방세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, 주소또는거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0 -53

성명 (별첨조서참조) 최선호의 51 명

2. 구분 : 청산금납입고지서 72년 수시분

가. 납부기간 : 73. 2. 10 까지

나. 납부장소 :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행정과

1973. 1. 30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역촌추가지구고지서공시송달자

수납번호	물건지	금액	소유자		비고
			주소	성명	
14	응암동 376-7	1,866,807	성북동 170-53	최선호	의 1인
16	" 376-19	1,267,800	신당동 290-127	김인곤	
23	" 397-181	198,793	신사동 224	김영수	
24	" 397-117	806,531	낙원동 248-6	한국예술영화회	
43	" 319-41	310,130	효창동 5-37	하대수	
44	" 328-2	517,971	응암동 279-1	채규현	
54	" 305-2	359,104	인사동 120	홍봉환	
73	" 305-34	179,852	응암동 272-108	정정호	
94	" 산 14-9	48,136	" 산 14-9	전선필	
95	" 302-1	116,784	" 297-66	최선덕	
96	" 257-48 외 2 필	364,306	" 302-2	이경희	
116	" 306-33	125,450	다 동 91-3	조상영	
121	" 306-40	186,837	돈암동 84-60	조관행	
130	북가좌동 13-15	249,039	고양군원당면도내리 592	유정열	
134	" 14-1	297,062	북가좌동 14-1	김원포	
152	응암동 328-11	368,074	소격동 98	김종수	
161	" 393-14	158,162	동선동 3가 106	김정식	
165	" 393-22	220,052	응암동 369-9	채준희	
166	" 393-23	109,354	충정로 3가 3-315	김영춘	
176	" 375-4	149,790	이태원동 271	박윤식	
180	" 378-15	169,767	응암동 378-15	김세창	

수납 번호	물 건 지	금 액	소 유 자		비 고
			주 소	성 명	
181	응암동 378 - 16	194,288	청주시수동 22	진수근	
186	" 378 - 46	267,544	응암동 378-46	강화용	
205	" 386 - 5	189,118	신당동 58	이상선	
212	" 386 - 15	644,782	증산동 134-2	이한갑	
260	" 378 - 101	104,256	수송동 134	방다니엘	
265	" 379 - 32	813,123	공덕동 5-23	이충호	
272	" 382 - 10	450,906	홍은동산 11	손정자	
277	" 514 - 3	184,575	신당동 162-294	김경정	
278	" 514 - 4	162,426	북아현동 3-72	박종찬	
290	" 514 - 16	163,819	만리동 2가 199-119	이상석	
297	" 379 - 37	820,970	안암동 2가 95-11	홍정자	
300	" 514 - 49	59,427	응암동 514-49	한수희	
309	" 515 - 11	223,818	구산동 43	강상주	
317	" 515 - 32	176,204	창천동 76-32	변용석	
343	" 515 - 25	82,035	응암동 515-25	유영화	
344	" 515 - 26	439,521	응암동 378-63	강경순	
354	" 311 - 6	597,592	본동 248-2	김우식	
365	" 317 - 22	288,748	신사동 160	김옥산	
405	" 525 - 12	182,990	응암동 525-12	이경자	
426	북가좌동 34 - 35	99,736	북가좌동 34-35	성희정	
466	응암동 530 - 10	226,072	보문동 5가 253	조성낙	
492	북가좌동 8 - 17	110,981	안국동 36-2	이승유	
496	" 10 - 1	207,994	봉천동산 89	박권수	
526	" 32 - 19 29 - 5	122,033	성북동 2가 275-70	양준승	
541	응암동 317 - 12 87	1,236,281	창성동 54-1	이옥주	
558	" 533 - 9	119,738	석관동 333-315	윤간중	
561	" 533 - 14	186,360	연희동 519-90	박희문	
565	" 533 - 44	335,448	응암동 533-44	고광모	
583	" 539 - 5	120,073	갈현동 246-67	송명호	
584	" 539 - 6	120,073	한남동 255	한창열	
587	" 315 - 19	569,232	응암동 315-19	이희운	

사 령

◎ 1973.1.29.

공무원교육원 지방서기관 서 승택
을지연습 73 전시국가지도회의
본부파견 (73.2.1-73.4.20 까지)
근무를 명함.

공무원교육원 지방서기관 한 상건
을지연습 73 전시국가지도회의
본부파견(73.2.1-73.4.20 까지)
근무를 명함.

운수운영과 지방행정사무관 이경배
을지연습 73 전시국가지도회의
본부파견 (73.2.1-73.4.20까지)
근무를 명함.

◎ 1973.1.30.

종로구보건소 지방간호기사보 장계월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서울특별시장

정 정

시보 제 342 호

서울특별시 고시 제 16 호

문화재지정년월일 73.1.17 을 73.1.26 로 정정함.